

인천 청라지구 14블럭/18블럭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안)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국토해양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인터넷 청약 등의 시행 지시]2006.11.27)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내에 위치한 학교시설은 향후 교육청 계획에 의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 당사 견본주택 관람(국토해양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인터넷 청약 등의 시행 지시]2006.11.27)에 의거 당사 견본주택 공개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 [2008. 7. 4 (금) 10:00]부터 당첨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이버 모델하우스(www.cheongnahoban.com)를 통해 사전관람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 KB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 KB모바일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14블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6896호(2008. 6.1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14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층, 지상20~30층 10개동 총 7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46,639.0㎡ 중 아파트 지분 45,937.0㎡, 상가 지분 702.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특별공급 98세대 포함)

(단위 :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	층수	층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중도금						잔금 (입주 지정일)				
	일반				공급면적							계약금	중도금												
	인천광역시	수도권			전용면적	주거공용	계						계약시	1회 08.10.10	2회 09.02.10	3회 09.06.10	4회 09.10.12	5회 10.02.10	6회 10.08.10						
민 택	21958-01	21959-01	2008000564(01)	111,2275	84,9589	26,2686	111,2275	50,2731 (47,2554)	161,5006	61,6520	20~30	106,467	1층	10	160,333	266,800	53,300	26,600	26,600	26,600	26,600	26,600	26,600	53,900	
													2층	10	171,933	278,400	55,6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56,000
													기존총	450	182,333	288,800	57,7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58,300
													최상총	20	205,733	312,200	62,4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62,600
민 택	21958-02	21959-02	2008000564(02)	112,3793	84,9925	27,3868	112,3793	50,2929 (47,2741)	162,6722	61,6764	20~30	106,509	1층	10	161,791	268,300	53,6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53,900	
													2층	10	173,391	279,900	55,900	27,900	27,900	27,900	27,900	27,900	27,900	56,600	
													기존총	225	183,891	290,400	58,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58,400	
													최상총	10	207,391	313,900	62,700	31,300	31,300	31,300	31,300	31,300	31,300	63,400	

■ 18블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6897호(2008. 6. 1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18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4~30층 8개동 총 1,0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47,755.65㎡ 중 아파트 지분 46,046.0㎡, 상가 지분 1,709.65㎡)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특별공급 141세대 포함)

(단위 :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	층수	층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중도금						잔금 (입주 지정일)				
	일반				공급면적							계약금	중도금												
	인천광역시	수도권			전용면적	주거공용	계						계약시	1회 08.10.10	2회 09.02.10	3회 09.06.10	4회 09.11.10	5회 10.04.12	6회 10.10.11						
민 택	21960-01	21961-01	2008000565(01)	81,031	59,860	21,171	81,031	45,647 (42,011)	126,678	43,806	24~30	74,484	1층	12	130,016	204,500	40,900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41,200	
													2층	16	139,216	213,700	42,700	21,300	21,300	21,300	21,300	21,300	21,300	21,300	43,200
													기존총	394	147,516	222,000	44,400	22,200	22,200	22,200	22,200	22,200	22,200	22,200	44,400
													최상총	394	147,516	222,000	44,400	22,200	22,200	22,200	22,200	22,200	22,200	22,200	44,400
민 택	21960-02	21961-02	2008000565(02)	79,864	59,936	19,928	79,864	45,704 (42,064)	125,568	43,862	24~30	74,579	1층	12	128,621	203,200	40,600	20,300	20,300	20,300	20,300	20,300	20,300	40,800	
													2층	16	137,721	212,300	42,4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42,700
													기존총	394	145,921	220,500	44,1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44,400
													최상총	394	145,921	220,500	44,1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44,200
민 택	21960-03	21961-03	2008000565(03)	79,937	59,738	20,199	79,937	45,554 (41,926)	125,491	43,717	24~30	74,332	1층	4	128,568	202,900	40,500	20,200	20,200	20,200	20,200	20,200	41,200		
													2층	8	137,668	212,000	42,4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42,400	
													기존총	195	145,868	220,200	44,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44,200	

- 상가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가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가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 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일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가 중 도급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일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상환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가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애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가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가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2003.6.7)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 제한(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에 속한 분과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가입자 중 세대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가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주택투자지역(2006.5.26)으로 지정되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됨.

- 당 사업자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를 특별공급 함.
- 상가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 사항

● 신청일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4항 : 2008. 6. 24 (화) 10:00~17:00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1) 85점 이상 : 2008. 6. 24 (화) 10:00~17:00 2) 85점 미만 : 2008. 6. 25 (수) 10:00~12:00
- ※ 85점 이상 신청자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85점 미만은 접수하지 않음.

● 청약접수 장소 :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6. 25 (수) (14:00)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자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공급,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타 특별공급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자 본인(대리인의 경우 1인) 이외에는 견본주택에 출입할 수 없음(추첨일에도 동일함)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 배정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14블럭 - 38세대 / 18블럭 - 5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종사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 · 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당해지구 소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특례를 적용받은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무주택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외국인은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

3.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6.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1년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무주택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연속, 세대주 기간 산정은 합산, 외국인인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 유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9조 입주자격 상설자에 대한 조처"에 의거 계약자는 등기 이전 완료 전까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전출, 퇴직) 등한 자는 분양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하고 사업주체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 함

2.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 청약접수자는 청약접수 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정이 "주택특별공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해지되므로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람.

3. 특별공급 추첨 당첨자는 본 입주자 모집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

주택형	14블럭			18블럭		
	111,2275㎡	112,3793㎡	합 계	81,031㎡	79,864㎡	79,937㎡
공급 세대수	25	13	38	22	22	11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접수하고, 동 · 호수 추첨일 이후 당사에서 당첨자의 청약접수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추천서를 요청함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추천서를 발급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동 · 호수 추첨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해당 특별공급의 경정이 있을 경우, 외국인에게 우선 공급함(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 대상자 구비서류

외국인	내국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주민등록증
- 여권 및 비자(외국인)	- 사업자등록증 (호적등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1년 이상)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증서류
- 임대보증서 및 임대도장	-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증서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1년 이상)	- 재직증명서

※ 상가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14블럭 - 22세대 / 18블럭 - 3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6. 20)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재(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26%,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24% 비율로 다음과 같이 각각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세대

주택형	14블럭			18블럭			
	111,2275 m ²	112,3793 m ²	합 계	81,031m ²	79,864m ²	79,937m ²	합 계
공급 세대수	인천광역시	8	4	12	6	6	16
	경기도	4	2	6	3	3	8
	서울특별시	3	1	4	3	3	7
	합계	15	7	22	12	12	31

- 대상자 구비사항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6. 20)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 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상기 제 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6. 20) 이후 발행분에 한하고,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은 본 공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선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특별공급 (14블럭 - 38세대 / 18블럭 - 5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철거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6. 20)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자는 관련기관의 장이 선정하여 당시에 통보하며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특별공급 세대

주택형	14블럭			18블럭			
	111,2275m ²	112,3793m ²	합계	81,031m ²	79,864m ²	79,937m ²	합계
공급 세대수	25	13	38	22	22	11	55

- 대상자 구비서류
 -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 및 기타 본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세대주)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일반공급(14블럭 - 647세대 / 18블럭 - 91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6. 20)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가능)

-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중액변경 하여야 청약 가능함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 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점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료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제와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공통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 추정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정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정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정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전 주택형
	2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정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정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600만원	25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가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인천광역시 /수도권	2008. 6. 26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KB모바일 :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 평일 08 : 30 ~ 18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8. 7. 4 (금) 10:00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및 홈 페이지 (www.cheongnahoban.com) - 2008. 7. 4일자 (일간신문) 한국경제신문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를 대화청음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개방합니다.
	2순위	인천광역시 /수도권	2008. 6. 27 (금)		
	3순위	인천광역시 /수도권	2008. 6. 30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블럭 : 우리은행 본지점 - 18블럭 : 신한은행 본지점 및 인터넷 청약 (www.shinhan.com → 금융과서비스 → 부동산) · 접수시간 : 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블럭 : 09 : 30 ~ 16 : 30 - 18블럭 : 08 : 30 ~ 18 : 00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와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집점은 적용됨).
-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청구청약 가능시간: 09:30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서만 가능]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세대주 인정기간의 선정에 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선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주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신청접수 방법

- 총별·동별·호별 구분 없이 단지별,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신청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3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3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6. 20)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3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 물량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1·2순위: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3순위: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각 주택형태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 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 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상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장기간 보유특례)
-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중전 무주택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② (현재 : 무주택자)중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처분일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모바일 신청접수 방법

구 분	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18블럭) :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는 분(단, 신한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KB모바일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P폰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자점→인터넷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12you.com)에 접속
	KB모바일	-SKT : Mbank접속→ KB StarNet→ 모바일주택청약→ PIN입력→ 주택청약신청 -KTF, LGT : KB뱅킹 접속→ 모바일주택청약→ PIN입력→ 주택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청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14블럭-우리은행/18블럭-신한은행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정(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정(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14블럭(우리은행)	전 주택형	200만원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요양 (은행 창구 신청접수만 가능)
18블럭(신한은행)			인터넷 청약신청한 가능함. 단,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요양(은행 창구 청약자에 한함)

※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18블럭) :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에 해당 면적 신청금액을 예치한 후 신한은행(18블럭) 사이버 청약지점에 접속 후 접수 절차에 따라 청약신청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청약자 발표일 이후 은행 영업일(2008. 7. 7 (월)부터 환불 가능, 평일 09:30~16:3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14블럭 ~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 / 18블럭 ~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 (단, 지정계좌 [청약자 본인의 우리은행(14블럭)/신한은행(18블럭)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청약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류)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우리은행(14블럭)/신한은행(18블럭)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자의 인회하여 각 주택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3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008. 7. 9(수)까지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 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2008. 8. 1(금)당사 견본주택내에 동·호수 배정 추첨 등 공급방법을 게시할 예정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 공급 이후 잔여세대의 선착순 임의공급 방법은 2008. 8. 1(금) 예비당첨자 공급방법 게시일에 당사 견본주택 내에 별도로 게시할 예정임.

■ 인터넷, ARS, KB모바일,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사항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부동산->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에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8. 7. 4 ~ 2008. 7. 13 (10일간)	2008. 7. 4 ~ 2008. 7. 13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38-9999) [서비스코드 : 701]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08. 7. 4 ~ 2008. 7. 13 (10일간)	2008. 7. 4 ~ 2008. 7. 13 (10일간)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8. 7. 4 ~ 2008. 7. 13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8. 7. 4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 2008. 7. 10 (목) ~ 2008. 7.13(일) (4일간, 시간 10:0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 준비요망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고기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14블럭

구 분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701-030715	(주)호반하우징

● 18블럭

구 분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23-631474	(주)영무건설 / (주)호반건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우리은행(14블럭)/신한은행(18블럭)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단,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6. 20)이후 발행)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계약시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내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특별공급 및 1순위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기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당첨 금지 등 부적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2002. 9. 50)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함)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 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주택임대기간 완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임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재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자 제외가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 사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됨(단, 임대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 만료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14블럭 최상층 세대의 다락방은 해당 입주자가 사용하는 데 동의하며, 개인 소유면적으로는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바닥재	<강화마루(갈레반이 포함)>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석재현관, <장판>침실,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발코니바닥 배수구	바닥 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장식벽(타일, 시트지), 주방벽타일, 몰딩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초배지 / 천장(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초배지), 커튼박스, 우물천정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욕실등	매입등,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석재(바닥, 벽, 대리석바탕 등), 재료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금수·급탕 등 배관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TV,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철수패드, 4구쿠팅 및 오븐렌지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 전기·통신 배관/ 배선(주방TV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실내환경조절기, 에어컨배배관 (14블럭 : 거실, 안방/18블럭 : 거실, 안방)
창호	창호(문틀, 목문막,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출, 플라스틱 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록, 대피공간 방화문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파단,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4블럭		18블럭		
	111,2275㎡	112,3793㎡	81,031㎡	79,864㎡	79,937㎡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18,650,000	18,840,000	13,630,000	13,440,000	13,450,000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함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2. 계약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자체 발주문제로 인해 변경이 불가함.
3.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 건축공사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등록 실내건축공사업자 현황 참고(분양사무실)
5.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소방방재 설비 등 기 시공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발코니확장(마감재 제외)과 가벽식의 칸막이 제거(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파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엔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 14블럭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 18블럭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 용자안내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의 중도금 대출 제한비용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기로 함.
- 본 주택은 투기지역에 위치하여 당해 주택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매수인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 용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공급대금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총 부채상환비율(DT) 및 주택담보 안정비율(LTV)이 적용됨.

■ 입주자 사전점검

-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개시전에 사업주체의 통보일정에 따라 실시함.

■ 입주예정일

- ◎ 14블럭 - 2011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 18블럭 - 2011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라경제자유구역 1-1단계 기반시설의 미비 및 부지조성공사 지연시 입주 예정일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내역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전용면적 85㎡ 이하).

◎ 14블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합계		215,617,000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57,087,391	건축(23)	지붕 및 홀통공사	104,297	
	기간이자	6,472,065		창호공사	2,881,279	
	필요적 경비	3,356,611		유리공사	638,670	
	그밖의 비용	12,412,477		타일공사	1,510,932	
		1,475,257		돌공사	1,164,395	
공사비	토목(13)	토공사	684,773	공사비	도장공사	645,840
		흙막이공사	-		도배공사	334,601
		비탈면보호공사	-		수장공사	1,155,898
		옹벽공사	-		주방용구공사	1,645,188
		석축공사	-		접공사	298,987
		우·오수공사	684,773		급수설비공사	384,489
		공동구공사	-		급탕설비공사	523,124
		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3,357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538,681
		도로포장공사	436,864		위생기구공사	1,075,696
		교통안전시설물공사	33,288		승강기계공사	844,544
	정화조시설공사	-	난방설비공사	585,293		
	조경공사	3,236,208	가스설비공사	390,903		
	부대시설공사	237,779	자동제어설비공사	372,590		
	공통기설공사	2,195,874	특수설비공사	127,252		
	가시시설물공사	2,525,255	전기	6,849,724		
	지정 및 기초공사	2,803,272	정보통신	2,446,523		
	철골공사	-	소방설비	4,066,496		
철근콘크리트공사	33,869,567	그밖의 공사비(2)	3,849,530			
용접공사	-	이윤	4,987,650			
조적공사	614,843	간접비(6)	설계비	1,284,000		
미장공사	2,420,951		감리비	2,423,680		
단열공사	139,767		일반분양시설경비(건본주택간접비) 등	5,845,200		
방수·방습공사	1,148,917		분담금 및 부담금	1,085,467		
목공사	2,462,420		보상비	-		
가구공사	641,012		기타사업비성 경비	11,886,217		
금속공사	1,104,671	그밖의 비용(1)	20,297,235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상기 항목별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수 있음.

◎ 18블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합계		231,500,000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54,986,622	건축(23)	지붕 및 홀통공사	118,586	
	기간이자	4,584,228		창호공사	2,902,343	
	필요적 경비	3,233,366		유리공사	643,191	
	그밖의 비용	15,487,197		타일공사	1,521,953	
		1,916,302		돌공사	1,230,829	
공사비	토목(13)	토공사	804,450	공사비	도장공사	650,527
		흙막이공사	-		도배공사	337,134
		비탈면보호공사	-		수장공사	1,163,731
		옹벽공사	-		주방용구공사	1,657,212
		석축공사	-		접공사	407,576
		우·오수공사	804,450		급수설비공사	675,389
		공동구공사	-		급탕설비공사	929,911
		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5,692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925,643
		도로포장공사	470,000		위생기구공사	1,496,449
		교통안전시설물공사	48,020		승강기계공사	968,000
	정화조시설공사	-	난방설비공사	973,658		
	조경공사	3,575,000	가스설비공사	635,948		
	부대시설공사	357,215	자동제어설비공사	588,794		
	공통기설공사	2,195,542	특수설비공사	535,704		
	가시시설물공사	2,449,504	전기	6,738,768		
	지정 및 기초공사	2,934,889	정보통신	2,374,883		
	철골공사	-	소방설비	4,385,708		
철근콘크리트공사	41,351,862	그밖의 공사비(2)	4,413,061			
용접공사	-	이윤	5,715,867			
조적공사	619,339	간접비(6)	설계비	1,066,400		
미장공사	2,752,624		감리비	2,540,581		
단열공사	140,789		일반분양시설경비(건본주택간접비) 등	5,932,480		
방수·방습공사	1,093,021		분담금 및 부담금	1,861,344		
목공사	2,567,837		보상비	-		
가구공사	717,442		기타사업비성 경비	12,450,432		
금속공사	1,112,746	그밖의 비용(1)	22,244,212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상기 항목별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단지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 동일한 청약예금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함
- * 기본주택 세대 공개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2008. 7. 4)부터 당첨자에 한하여 공개함. * 건본주택에는 18블럭 79,937㎡ 주택형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함
-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인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인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 본 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상기 세대당 공급연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함.
-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체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에 따라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건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지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품,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시아버 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청라지구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 및 허가관청,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광역교통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지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항(위엔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별도로 통보될 예정으로 공급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지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건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상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상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 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단지내 주민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본 아파트 주변이 개발될 예정이나 관련기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타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 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 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 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확장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 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 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겐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 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

* 어린이 놀이터 및 옥외 운동시설과 수 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량이 감소(침해)될 수 있음. * 인접도로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자동 크린넷)이 설치되어 쓰레기 투입구가 노출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센터의 경우 선르과 연계된 지하에 설치되며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이 불 리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영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따른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청라지구 전체 경관상세계획(DCP)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14블럭의 101동, 110동의 경우 지상주차장 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4블럭의 111,2275㎡형의 경우 세대별 위치에 따라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홀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4블럭의 111,2275㎡형 침실3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4블럭의 111,2275㎡형 확장시 가족실 및 침실에 설치된 선홍통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4블럭의 112,3793㎡형 확장시 가족실 및 침실3에 설치된 선홍통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4블럭의 최상층 세대 테라스의 형태 및 면적은 동·호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 어 청약 및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18블럭의 81,031㎡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4 상부에 설비 연결관이 설치됨. * 18블럭의 79,937㎡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2 상부에 설비 연결관이 설치됨.

* 18블럭의 79,864㎡형의 현관 전원이 복도형태로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통풍 및 채광에서 타 세대에 비해 불리할 수 있음.

* 18블럭의 81,031㎡, 79,864㎡, 79,937㎡형 안방과 발코니1 사이 벽체는 내력벽으로서 임의로 발코니 확장이 불가함.

* 14블럭 단지 남동측에 위치한 근린공원7내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향우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14블럭 단지 남서측 및 18블럭 단지 서측에 인접한 완충녹지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임.

* 14블럭 및 18블럭 단지 북측에 위치한 근린공원8내에는 부지 좌측에 위치한 중봉로(광주2-4)내 설치 예정인 지하차도의 관리사무실이 계획되어 있음.

* 14블럭 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근린공원9내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변전소, 열교환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향우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14블럭 및 18블럭 단지 남측 부지에 초고층의 주거단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의한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해질 수 있어 향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8블럭 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근린공원6내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변전소, 열교환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향우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18블럭 단지 남동측에 위치한 근린공원7내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향우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18블럭 아파트의 분양광고상 명칭은 “호반베르디움”이나 준공시 건축물 명칭 표기는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라 “호반베르디움 & 영무에다움”이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청라지구 인접지에는 각종 환경위해시설(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서부산업공단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풍향 등에 따라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및 단지 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당 아파트 인근의 학교설치는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학교 개교는 인천시 교육청 일정에 의한.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풍동 실험결과 및 외부인편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용급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은 불가함.

* 공장생산 자재(타입)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한.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할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한.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 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인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한.

■ 확장형 발코니 공사비 (금액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4블럭		18블럭		
	111,2275㎡	112,3793㎡	81,031㎡	79,864㎡	79,937㎡
기본공사비(A)	6,480,000	5,840,000	9,340,000	3,240,000	7,870,000
확장형 공사비(B)	18,990,000	17,690,000	20,100,000	9,320,000	17,400,000
차액(B-A)	12,510,000	11,850,000	10,760,000	6,080,000	9,530,000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회사명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14블럭	회사명	(주) 태원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주)세광이씨	(주)동도이엔씨	(주)동도이엔씨
	감리금액	₩1,652,200,888	₩600,979,632	₩40,700,000	₩129,800,000
18블럭	회사명	(주)영화키스트 건축사사무소	(주)동도이엔씨	(주)동도이엔씨	(주)동도이엔씨
	감리금액	₩1,725,167,266	₩649,414,679	₩22,000,000	₩144,000,000

■ 시행자 및 시공사

구분	14블럭	18블럭
사업주체	(주)호반하우징(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광주-주택2004-0016)	(주)영무건설(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광주-주택2002-0005)
시공사	(주)호반건설(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전남-주택1999-0003)	(주)호반건설(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전남-주택1999-0003)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구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14블럭	제05612008-101-0001700호	₩ 172,152,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공사 포함)까지
18블럭	제05612008-101-0001800호	₩ 185,031,4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공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처명, 이종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 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트,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 공사)과 관련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cheongnahoban.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9번지(인천시청 옆) ☎(032)435-9100

- 개관일시 :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2에 의거 당첨자 발표 후에 견본주택을 개발(2008. 7. 4 이후/당첨자에 한함)하며, 청약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이버모델하우스 (www.cheongnahoban.com)를 통해 사전 관람하시기 바람.

- 교통편(지하철) : 경인전철 이용자는 부평역에서 환승하여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5분 출구에서 (인천시청 정문 → 구월중학교 방면) 도보이동(6분 정도 소요)

※ 본 견본주택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사오니, 계약을 위하여 방문하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8블럭 아파트의 분양광고상 명칭은 ‘호반베르디움’이며, ‘준공시 건축물 명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라 ‘호반베르디움 & 영무에다움’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 및 의문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